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약관

손해배상공제보통약관과 특별약관

- 제1조 (공제계약의 성립)** ①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조합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공제조합”은 “조합”이라 합니다)
- ②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공제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공제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 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조합이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를 포함합니다.)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④조합이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조합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조합에 알린 내용이 공제금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조합이 증명하는 경우
 2. 제7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이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⑥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조합은 피공제자(피공제자의 피용자 및 하수급인을 포함합니다)가 증권에 기재된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 직업 업무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해당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조합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 이후에 발생되고 공제기간 중에 처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단, 소급일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공제개시일로 합니다.

- 제3조 (공제료)** ① 공제료는 다른 서면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 ②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서면약정이 없으면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조합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조합의 책임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00:0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24:00시에 끝납니다. 단, 공제의 담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호가 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합니다.) 제2조제1호의 전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 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법 제2조제1호가 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영 제2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 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②조합은 제1항의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공제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제1항의 시각은 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제5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조합이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다음 각목의 비용
 - 가. 피공제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공제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공제자가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다만, 조합은 공탁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마. 피공제자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조합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6조 (보상한도) ①조합은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5조제1호의 손해배상금 :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5조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5조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조합이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공제기간에 대한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조합은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발주자가 인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변경으로 인해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 제작, 설치, 구축비의 증가
 9.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다만, 엔지니어링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이 폐수처리장 등 환경관련시설인 경우 급격하게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은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10. 상표권, 상호권,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11.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하는 공제의 경우에도 조합은 제1항제1호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피해자에게 공제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9조 (계약후 알릴 의무) ①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알리고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조합이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 ①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조합이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합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2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조합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제한)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엔지니어링사업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공제계약 해지요청
2.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착공계획의 취소
3.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확정적 중단
4. 착오로 인한 공제계약

제14조 (공제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1. 무효의 경우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공제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2.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 총공제료에서 진척율을 감안하여 산출된 경과공제료를 제외한 금액.

제15조 (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조합의 서면동의 없이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조합이 서면 동의를 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공제)인 경우에는 조합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손해방지의무) ①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조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①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공계약관에 의하여 조합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조합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조합이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조합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합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공제금의 지급) ①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
2. 공제증권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조합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제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이 추정한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급적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③조합이 제2항의 지급공제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조합은 피공제자가 제1항의 서류중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일체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조합은 동 공제계약의 사고처리, 손해사정, 공제금의 지급 등 보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피공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손해보험회사와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은 단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으로 보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대위권) ①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 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이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조합이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조합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1조 (조사) ①조합은 공제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조합은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조합에서 정한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조합은 합의에 의해 분쟁조정기관을 선정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조합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조합은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조합은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조합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제25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조합은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14조에 의하여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6조 (공제금의 부담) ①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보험계약 및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

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조합은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조합의 제1항에 의한 지급 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7조 (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8조 (약관의 해석) ①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조합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조합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29조 (조합이 제작한 공제안내장의 효력)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조합 제작의 공제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엔지니어링사업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발주자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자
제3자	제3자라 함은 피공제자(하수급인을 포함합니다) 및 피공제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합니다.
재산상의 손해	재산상의 손해라 함은 아래 1), 2)의 손해를 말합니다. 단, 어느 경우에도 영업이익손실등의 간접손해는 제외합니다. 1) 엔지니어링사업이나 시설물의 경우 o 잘못된 엔지니어링활동 등으로 인한 엔지니어링사업이나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 자체에 대한 손괴나 결함손해로 잔존물철거비, 엔지니어링사업 재추진비용을 포함합니다. o 원래의 사용의도에 맞도록 엔지니어링사업이나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제3자의 경우 o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관련자의 주위재산피해 및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의 재산피해중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이 약관 제2조 제2항의 공제기간중에 처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1회의 사고로 피공제자, 조합 중 어느 한쪽이 먼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접수한 날짜로 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조합에 알린 날짜를 손해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짜로 봅니다.
담보지역	1)공제증권에 기재된 국가 2)공해 또는 공공(公空).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테러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공제의 목적	공제의 목적이란 증권상에 기재된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합니다.

발주기관담보 추가약관

제1조 (추가피공제자) 조합은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도 보통약관 제2조의 피공제자로 봅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제기간유보추가약관

제1조 (담보의 특칙) 조합은 보통약관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제증권의 공제기간란에 보통약관 제4조에 의한 착공일과 완공일 또는 착수일과 완료일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차책임추가약관

조합은 보통약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증권의 공동피공제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자담보 특별약관

제1조 (담보기간) 조합은 이 공제의 담보기간을 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보통약관 제7조의 면책사항에 추가하여 재물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적용환율특별약관

제1조 조합은 공제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 공제료 : 청약일

2. 추가및환급공제료 : 배서일
3. 해지환급공제료 : 해지일
4. 분납공제료 : 납입해당일

제2조 공제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공제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 (공제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의 증권당 최종 적용공제료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제료를 ()화에 분할하여 조합에 냅니다.

제2조 (제2회 이후 분할공제료의 납입) ①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 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조합은 계약자가 제2회 이후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3조 [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조합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조합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공제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②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말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끝납니다.

③조합이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은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이 환급하여야 할 공제료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 [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3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4조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조합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보통약관 제14조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조합은 해지 당시의 피공제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조합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조합에게 지급하고 조합의 승낙을 얻어 계약자 명의를 피공제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조합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조합은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피공제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피공제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미납입공제료 공제) 조합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공제금이 이미 받은 공제료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공제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의 피보험자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